

ISSUE BRIEFING

젠더(Gender)교육의 위험성

I. 들어가는 말

국민일보는 2018년 12월 12일에 ‘남녀 외 다른 성 있다? 학교는 ‘젠더 이데올로기’ 수업 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도덕’ 7종, ‘기술·가정’ 2종, ‘보건’ 2종,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3종, ‘보건’ 4종 교과서 등에 다양한 성, 즉 젠더를 옹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용어가 다수 들어있다고 한다. 또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젠더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역할을 의미한다. 이때 생물학적 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서술했고, 성적 지향을 “특정한 성별에 애정적으로 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제3의 성을 창설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크리스천투데이의 2018년 12월 13일자 기사는 급진적 성(性)이데올로기에 관

한 교과서(81권 전 출판사)의 내용 분석을 보도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7~10가지 피임법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성교육과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의적 유해성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하였다.

위 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교과서들을 검토해 보니, 실제로 중학교 보건, 기술가정, 도덕 교과서와 고등학교 보건,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모두 ‘젠더(gender)’가 소개되어 있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실린 젠더의 개념 정의가 매우 피상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각기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거나 젠더에 ‘성 정체성’ 개념을 포함시켜서 트랜스젠더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젠더의 정의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설명을 누락시킴으로써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의 개념도 해석상 가능한 편향적이거나 확장적 위험성을 지닌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 심지어

어, 젠더는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내용도 있어서, 성별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한 예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리베르 스쿨 중학교 도덕1, 144 페이지**

사회·문화적 성(gender)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며 학습되는 성역할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성은 상대방을 생물학적 특징과 관계 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 확인: 성이란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기준이다. (O, X)

▶ **비상교육 중학교 도덕1, 139 페이지**

젠더(gender): 사회적·문화적 성 역할 또는 성 정체성을 의미함.

▶ **❧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134 페이지**

젠더(gender):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 제도 등의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회적 성

▶ **지학사 중학교 기술·가정1, 23 페이지**

성(gender): 사회·문화·심리적인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성

▶ **도서출판 들샘 중학교 보건, 53 페이지 (남성과 여성 언급 없음)**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성(Gender)

▶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67 페이지**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 제도 등의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회적 성(gender)

▶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76 페이지**

사회적 성(gender):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역할을 의미한다. 이때 생물학적 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와이비엠 고등학교 보건, 54 페이지 (남성과 여성 언급 없음)**

젠더(gender): 사회·문화적인 성, 성별, 성 역할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젠더(gender) 개념의 불명확성과 확장성을 살펴보고, 젠더교육의 위험성을 외국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II. 젠더(gender) 개념의 불명확성과 확장성

1. 성별(sex)¹에 대한 개념 정의의 중요성

인간의 성별(sex)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어떻게 나누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중요한 사회제도들이 성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는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출산휴가는 누가 갈 수 있는지, 여자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자녀의 부와 모는 각각 누구인지 등등 이 모두가 성별의 결정과

¹ 본고에서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sex를 '성별'로 사용한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와도 일치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제도이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존재해 온 이러한 성별 결정과 구분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인간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위험한 혁명적 변화가 될 것이다. 자연의 질서 또는 신의 섭리라고도 하는 성별제도를 변경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젠더(gender)이다.

2. 젠더(gender)의 어원

젠더(gender)라는 단어는 중세 프랑스어에서 차용한 gendre라는 중세 영어에서 유래되었다. 그 어원은 라틴어 genus인데, 이는 ‘종류’나 ‘유형’을 의미한다.² 젠더는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서 명사와 대명사의 여성, 남성, 중성 구분을 의미하는 문법적인 용어로만 사용되어 오다가, 성과 학자 **존 머니**가 1950년대에 쓴 논문에서 전통적인 학술적인 용어인 성 역할(sex role)과 다른 젠더 역할(gender rol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³ 그러나, 존 머니가 부여한 새로운 의미의 젠더(gender)는 1970년대가 되어 페미니즘 이론이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의미의 젠더(gender)를 구분하는 개념을 수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⁴

3. 젠더(gender) 개념의 불명확성과 확장성

서구에서 젠더(gender)는 흔히 남성과 여

성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남성 또는 여성임에 대한 개인의 스스로의 인식을 말한다.⁵ ‘젠더(gender)’는 문화연구, 젠더학(여성학), 일반 사회과학의 학술 분야에서 흔히 ‘성별(sex)’과 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순수히 사회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성역할(gender role)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젠더는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었던 개념이고, 서구에서 이전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문 번역어가 없다. Sex를 의미하는 국어의 ‘성(性)’을 gender의 국문 번역어로 병용하는 관행 때문에, 많은 혼란과 오해가 야기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젠더라는 단어가 아예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⁶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젠더의 국문 표기도 각기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해냄에듀 출판사의 중학교 도덕1 교과서와 와이비엠 출판사의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에서는 sex를 ‘섹스’로, gender를 ‘젠더’로 sexuality를 ‘섹슈얼리티’로 표기하여 영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국문 음성차용으로 쓰고 있는 반면에, 지학사의 중학교 도덕1 교과서에서는 sex와 gender와 sexuality를 모두 ‘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혼란과 왜곡을 야기할 것이 우려가 된다.

한편, 젠더(gender)를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성’ 또는 ‘성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

2 Gender, New World Encyclopedia, <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Gender>.

3 동성애와 과학, 오선호, CREDO 매거진 2호, 36페이지 (2018년 12월).

4 Gender,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Gender>. 젠더가 페미니즘에서 지배적인 용어로 채택된 것은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이 (1960년대에) 널리 읽히면서부터라는 주장도 있다 (페미니즘의 개념들,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동년, 336 페이지 (2016)).

5 New World Encyclopedia, 앞의 글.

6 Naver 국어사전에 젠더를 ‘생물학적인 성에 대비되는 사회적인 성을 이르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 젠더의 개념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고, 다양한 견해와 해석에 의한 개념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용어의 의미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① 여권신장운동(페미니즘)과 젠더

대략 1960년대부터 현대 페미니즘 이론은 성(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사회 현실을 분석하는 새로운 범주로 도입했다.⁷ 여권운동가들의 젠더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⁸ 첫 번째 견해는 성별(sex)간의 생물학적인 차이에 집중하고, 그로 인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젠더 역할(gender role)을 수용한다. 이들은 여성의 출산과 수유의 생물학적 기능의 결과로 여성은 태생적으로 아이의 양육자라고 주장한다. 둘째 견해는 성별(sex)에 따른 자연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남성에게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힘에 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양 젠더의 평등한 대우를 위해 싸운다. 세 번째의 여권운동가들은 아무도 한쪽 성별(sex)의 전형적인 삶을 살지는 않기 때문에 젠더라는 개념을 폐지해야 하고, 따라서 젠더 담론은 아무도 충족할 수 없는 건강하지 않은 이상적인 젠더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젠더 트러블’의 저자이자, 동성애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섹스는 생물학적 성별,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별이라는 전통적인 구분법을 깨면서, 섹스, 젠더, 섹슈

얼리티는 모두 사회적 구성물이자 제도 담론의 효과로서 젠더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⁹ 이와 같이 여권운동가들 간에도 젠더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젠더 개념은 학문적으로도 확립된 것이 아닌,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는 젠더라는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저항하지만, 젠더를 당연시하고 고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끊임 없이 젠더의 개념과 위치를 이동시키는 사유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⁰

②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젠더

젠더의 개념에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도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에서는 성별(gender),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¹

7 페미니즘의 개념들,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동녘, 335 페이지 (2016).

8 New World Encyclopedia, 앞의 글.

9 젠더는 페리다-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읽기와 쓰기-, 조현준, 현암사 9 페이지 (2016).

10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교양인, 11 페이지 (2017).

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ictionary/listDictionary?menuid=001003006>).

◆성별(gender): “성별(gender)이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sex)에 근거하여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gender)을 의미하는 것이다.”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성적 및 낭만적 맥락에서 자신을 동성, 이성 혹은 양성애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을 뜻하는 말로 “성적 지향성”이라고도 한다. 이성애자·양성애자·동성애자 성적 지향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트랜스 젠더(transgender):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는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트랜스섹슈얼과 같은 말이다.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은 보통 특별한 구별 없이 같은 말로 쓰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에 따르면 성별이 gender이고, 성이 sex인데, 왜 성별이 gender의 번역어가 되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별’을 ‘gender’가 아닌 ‘sex’로 번역하고 있다.¹² 한국법제연구원의 번역은 헌법과 헌

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한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이 무엇을 근거로 ‘성별’이 ‘gender’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인권위 인권용어사전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왜 같은 의미를 가진 2개의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이 동의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트랜스섹슈얼은 남성과 여성간의 성별 전환으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 일반적인 반면, 트랜스젠더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제3의 젠더간의 성별 전환을 포함하며, 성전환 수술도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념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¹³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별’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서는 ‘성별’의 국내외적 의미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 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성(gender)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인 의미의 성(sexuality)”이며, ‘남녀동등권’이란 “남성 또는 여성이 성과 관련하여 차별과 폭력, 소외를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인권”이며, ‘성차별’이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설명한다.¹⁴ 인권위 해설집에 의

1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한국법제연구원, https://elaw.ki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37724&lang=ENG.

13 ‘젠더(gender)평등(속칭, 성평등)’ 정책의 위헌성, 진윤성,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30 페이지 (2018).

1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 277~278 페이지 (2005. 12.).

한 ‘성별’의 의미 혹은 ‘성차별’에 대한 정의는 가장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석에 따르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혹은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도 전부 포함되어 차별행위의 범주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¹⁵ 그런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의 설명은 성별을 gender라 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용어사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2008년 차별 판단지침은 인권위법상의 ‘성별’이란 젠더(gender)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여성, 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생물학적인 성(sex)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한다.¹⁶ 그러나, 이는 ‘성별’을 sex, gender, sexuality, sexual orientation, sexual identity, gender identity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인권위 해설집의 설명과 다르다. 여하튼, 상기 인권위 인권용어사전과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그리고, 차별판단지침을 종합해 보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성별이고, 이 성별이 젠더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젠더에 포함시키는 개념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 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교과서 178 페이지에는 ‘타문화 존중과 자문화 성찰’에서 남자가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

해요”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처의 그림이 실려 있고, 같은 책 184 페이지에는 “러시아에서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동성애자 간의 표시이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79~81 페이지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설명하면서 성적 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 마치 성적 소수자 문제도 성차별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래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73 페이지에는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할까?’라는 질문과 함께 동성혼을 합법화한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천재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66 페이지와 비상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80 페이지에서도 성차별을 다루면서 성적 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고, 동시에 같은 페이지 내에서 성역할과 젠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최광의의 젠더 개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젠더 개념의 확장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③ 법률용어로서의 젠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국제규약에서 정의하는 ‘성’은 ‘sex’로 명기되어 있다. 자유권과 사회권 국제규약에서 ‘젠더(gender)’를 법률적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¹⁷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CEDAW)’에서도 ‘sex’만이 사용되었다.

15 젠더(gender) 관련 차별금지 입법 연구, 이숙진, 국회입법조사처, 6페이지 (2010, 12.).

16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52 페이지 (2008).

17 이숙진, 앞의 글, 4 페이지.

우리의 경우, 헌법을 비롯하여 모두 13개의 법률에서 ‘성별’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느 법에서도 ‘성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¹⁸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성별’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성별’이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¹⁹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의 경우에도 동 조항을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으로 번역하여 ‘성별’이 ‘sex’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본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을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역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젠더평

등(gender equality,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sex만이 있을 뿐 gender는 없기 때문이다. 같은 곳인 한국법제연구원이 2016년에 발간한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보고서는 영문초록(Abstract)에서 동법을 ‘Act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으로 번역하여²⁰, 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번역이다. **국내법 가운데 젠더에 해당하는 용어를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는 없다.**

외국 입법례에서도 젠더(gender)를 명시하는 법률보다는 성별(sex)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젠더(gender) 개념이 아직까지 학문적이며 법률적으로는 일치된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²¹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나 인권법 등에서 성별(sex) 혹은 젠더(gender)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문을 통해 정의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몽고의 젠더평등(Gender equality)증진법은 젠더(gender)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4조에서 젠더(gender)를 ‘남성 혹은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가족의 영역에서 이루기를 기대하는 역할들, 책임감들 그리고 지위들에 대한 인지’로 정의한다.²²

베트남의 젠더평등(Gender Equality)법

18 위의 글, 5 페이지.

19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10. 11. 25. 2006헌마328.

20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전주열·김봉철·박연경·최유경·소은영, 한국법제연구원, 37 페이지 (2016).

21 이숙진, 앞의 글, 18 페이지.

22 Ulaanbaatar, Law of Mongolia on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2009.

도 젠더(gender)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 나라에 해당한다. 젠더평등법 제5조에서 젠더(gender)란 ‘모든 사회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 위치 그리고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며, 성별(sex)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정의한다.²³

한편, 미국 뉴욕주 뉴욕시 의회는 2002년에 트랜스젠더 권리장전²⁴을 제정하여, 뉴욕시인권조례(The 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가 보장하는 젠더에 따른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다. 뉴욕시인권조례 제 8-102조(정의) 제23항은 “젠더(gender)는 실제의 또는 인식된 성을 포함하고, 사람의 젠더 정체성, 자기 형상, 외모, 행위 또는 표현을 또한 포함하는데, 젠더 정체성, 자기 형상, 외모, 행위 또는 표현이 출생시에 그 사람에게 부여된 법적인 성별과 전통적으로 연관된 그것과 다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한다.²⁵ 뉴욕시 인권위원회(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젠더 정체성/젠더 표현에 관한 법 집행 가이드라인²⁶(이하 “뉴욕시 인권조례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르면 젠더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시스젠더(Cisgender):** 자기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sex)과 상응하는 젠더(gender)와 일치하는 사람을 나타내거나 관련된 형용사, 즉,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출생시에 부여된 성별(sex)과 같거나 다를 수 있는 사람이 내면 깊이 가지고 있는 젠더(gender)에 대한 감각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 예를 들어, 이름, 인칭 대명사 선택, 의복, 머리 모양, 행위, 목소리 또는 신체 특징을 통해 표현되는 젠더의 현출. 젠더 표현은 명확하게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닐 수 있고, 특정 젠더 정체성에 부여된 전통적인 젠더에 따른 고정 관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젠더 불일치(Gender Non-Conforming):** 젠더 표현이 전통적인 젠더에 근거한 고정 관념과 다른 사람을 기술하기 위해 때때로 사용되는 형용사. 모든 젠더 불일치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인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트랜스젠더가 젠더 불일치인 것도 아니다.

이외에도 뉴욕시 인권조례 가이드라인에는 간성(Intersex), 성별(Sex),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 대해서도 각각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2016년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무려 31개의 젠더²⁷를 승인 및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스젠더**’라 하여 젠더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2018년 10월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또는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의사의 특

23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e Law on Gender Equality, 2006.

24 Local Law No. 3 (2002); N.Y.C Admin. Code § 8-102(23).

25 23. The term “gender” shall include actual or perceived sex and shall also include a person’s gender identity, self-image, appearance, behavior or expression, whether or not that gender identity, self-image, appearance, behavior or expression is different from that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the legal sex assigned to that person at birth.

26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Legal Enforcement Guidance 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http://www1.nyc.gov/site/cchr/law/legal-guidances-gender-identity-expression.page>.

27 https://www1.nyc.gov/assets/cchr/downloads/pdf/publications/GenderID_Card2015.pdf.

별한 언급이나 소견서 없이 출생신고서의 생물학적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²⁸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서 작성시, 남성을 의미하는 ‘M’과 여성을 의미하는 ‘F’ 대신 ‘X’로 표시되는 제3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고와 베트남의 경우, 젠더를 남성과 여성에 국한해서 젠더 역할로 정의를 하였지만, 미국 뉴욕시의 경우 젠더를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무려 31가지로 정의하고 있고,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법률용어로서 정의를 한 젠더라 할지라도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고, 법률적으로 일치된 개념정의가 없으며 더욱이 계속 그 범위가 확장되어 나가는 성향이 있다.

4. 소결

성별(sex)을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별을 포함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주장되는 젠더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교과서에 사용된 젠더의 국문 표기와 그 내용도 각기 제각각이다. 젠더에 대하여 여성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정의들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지만, 종합해 보면 젠더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8 New York City Legalizes ‘Third’ Gender ‘X’ on Birth Certificates, Mayor Signs Bill, Christian Post, 2018년 10월 11일.
<https://www.christianpost.com/news/new-york-city-legalizes-third-gender-x-birth-certificates-mayor-signs-bill-227905/>.

외국 입법례를 보아도 법률적으로 젠더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젠더(gender) 개념이 아직까지 학문적이며 법률적으로는 일치된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젠더 자체의 불명확성과 확장성 때문에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젠더의 내용도 다 제각각이었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경우도 많았다.

이런 불명확성과 확장성을 지닌 젠더 개념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III. 젠더(gender)의 위험성

1. 젠더평등(gender equality, 성평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젠더 개념의 불명확성과 확장성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젠더평등(gender equality, 성평등)의 법제화를 시도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 2분법 체제하에서 양성 평등이 확립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 조항에서 ‘

양성'을 삭제하고,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헌법 개정 자체가 성사되지 않아, 이러한 시도는 중단이 되었지만, 이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이 대거 포함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중, 고교 교과서에 '젠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 젠더평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무척 우려가 되는 것은 젠더평등(성평등)을 이해하는 정부의 시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5월 10일자로 법무부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한 회신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는 모두 영어 'gender equality'의 번역으로서 정부는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 법무부의 답변대로라면 성평등에 반대하는 것은 곧 양성평등에도 반대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성평등에 반대하는 자들을 마치 남녀차별주의자로 몰아세우려는 것처럼 보인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²⁹⁾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분명

히 하고 있다.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출간한 때가 1990년이고,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해온 섹스(sex) 대신 젠더(gender)로 바꿔쓰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는 1995년에 열렸다.³⁰⁾ 그러나, 우리 헌법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제36조 1항)이 신설되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최초로 쓰인 것은 이보다 앞선 1980년의 제8차 헌법 개정 때이다.³¹⁾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여성회의의 결정이 있기 15년이나 앞서서, 우리 헌법에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신설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성별(sex)의 용어만 사용되었고, 젠더(gender)라는 용어는 단 한 군데도 사용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gender equality'라는 용어가 쓰인 국제인권규약은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젠더(gender) 개념이 아직까지 학문적이며 법률적으로는 일치된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젠더를 법률용어로 사용할 수는 없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0 95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성 표현 섹스 대신 젠더 결정, 조선일보, 1995년 9월 7일.

31 가정생활, 양성평등이 기초다, 여성신문, 2014년 4월 30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01>, / 5.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http://www.n-opinion.kr/?p=1661>.

29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gender equality’로 볼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이 어느 법률문서 또는 국제인권규약에 쓰인 ‘gender equality’를 수용하여 번역한 것이라는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냥 ‘gender equality’를 번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계에서도 gender equality는 성별/들 간의 평등이거나 성별 제도로 인한 차별 시정을 뜻하기 때문에 양성 간의 평등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³²

또한, 법무부의 주장대로, 양성평등=성평등=gender equality 이라면,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굳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어떤 특별한 이유로 신설이 필요하다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은 헌법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는 다른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젠더평등에 대한 여성계의 의견 충돌

젠더평등은 여성주의 논쟁의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여성학자와 여권운동가들 간에도 젠더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성평등³³이 필요한지, 그리고 성평등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고, 양성평등의 담론이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한다.³⁴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 Gender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간성 등을 포함하여 복수이고, gender equality는 성별/들 간의 평등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아니라는 견해(성평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³⁵

◆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평등(equality of men and women)’이어야 한다는 견해(성평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³⁶

◆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이고, “양성평등은 남성과 같은 평등(equality with men)”이기 때문에 양자는 다르고,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견해(성평등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음)³⁷

◆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른 것이고,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며, ‘성평등’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도 포함된다는 견해³⁸

◆ ‘양성평등’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목표를 가진 것이라는 견해(동성애와

32 정희진, 앞의 글, 49 페이지.

33 ‘성평등’을 ‘gender equality’의 번역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의 번역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34 여성이 다시 쓰는 사회계약: 성평등 개헌, 이진옥, 국민주도 성평등 헌법개정 토론회 자료집, 7~8 페이지 (2017).

35 정희진, 앞의 글, 33~34, 49 페이지.

36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여성정치합당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지영, 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26호) (2012).

37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김은주, 이화젠더법학 제9권 1호 (2017).

38 이진옥, 앞의 글.

트랜스젠더는 언급하지 않음)³⁹

◆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모두 ‘gender equality’의 번역어이고, ‘gender equality’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다는 견해⁴⁰

위의 견해들은 젠더평등,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이해하는 입장이 각기 다르고, 영어 원어도 gender equality,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equality of men and women 등 같이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 견해의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난해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젠더의 개념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 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이처럼 난해하고 위험한 젠더의 개념을 교육해야 할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하에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과거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

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⁴¹ 학문적으로 난해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일치된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젠더 용어를 교과서에 넣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교과서에 사용된 젠더 용어를 모두 삭제하고, 헌법재판소 판례에 있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 및 검증된 다른 국문 용어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젠더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남녀차별에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젠더 인권운동의 목표

젠더의 위험성은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젠더 인권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젠더평등의 목표는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성별 결정 기준의 변경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포함하여 현행법 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39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논리와 추진과제, 마경희, 문희영, 김현경, 박지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4 페이지 (2016).

40 성평등, 젠더이퀄리티, 젠더평등, 그리고 평등, 노혜경, 시사저널 2018. 3. 15.

41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고 판시⁴²하여 종합적 고려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젠더평등이 주장하는 심리적성결정설에 따르면, 사람의 사회적 성역할은 사회적 교섭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성이란 사회적, 역사적 힘의 산물이며, 따라서 사람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한 심리적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⁴³ 즉, sex는 gender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적인 판단에서는 심리적 기준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성전환자는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심리적 성에 따라 자신이 속한다고 느끼는 성에 귀속하며, 법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젠더평등은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이라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용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때까지는 남성(M)도 여성(F)도 아닌 X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심지어, 성별 구분 체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영국에서 ‘젠더평등’ 정책에 따라 입법된 젠더승인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자가 자신의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거나, 영국 이외의 해외 국가의 법에 의해 젠더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에 성전환수술을 받

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별정정허가신청이 가능하다.⁴⁵ 2008년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전환자 성별정정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대법원 규칙에 대해, 성전환수술 요건을 폐지하라고 결정하였다.⁴⁶ 서구 사례와 같이 성별 결정을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2) 남녀 성별 2분법 제도의 폐지와 제3의 성(젠더) 도입

현행 헌법과 민법 등에서는 성별을 남과 여로 구별함을 전제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에서도 간성을 별개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⁴⁷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도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이라고 판시하며,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성 구별로 보았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제3의 성(젠더)**이 인정된 적은 없다.

그러나, 젠더평등에서는 남녀 성별 2분법을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 가지 젠더의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42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43 성전환자의 성별기준에 관한 입법적 과제, 박기주, 입법과 정책 제5권 제2호, 2013. 12., 국회입법조사처, 150 페이지.
 44 자녀 출생신고서 성별 란에 ‘모름’ 적은 트랜스젠더, 나우뉴스, 2017. 7. 4.,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04601003>.

45 Gender Recognition Act 2004
 1. Applications
 (1) A person of either gender who is aged at least 18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gender recognition certificate on the basis of
 (a) living in the other gender, or
 (b) having changed gender under the law of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46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525 06진차673병합 성전환자 성별 변경 시 인권침해.
 47 서울남부지법 2007. 7. 3. 자. 2006호파4578, 결정.

31개의 젠더를 승인하였고,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영국의 현행 젠더승인법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젠더)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6년 영국 하원의 여성과 평등 위원회는 정부가 년 바이너리(non-binary)⁴⁸ 젠더 정체성을 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2017년에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공지하는 등 제3의 성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⁴⁹

(3)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변경

제3의 성(젠더) 도입은 필연적으로 현행 혼인제도의 변경을 수반하게 된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법은 이성혼 즉, 서로 다른 시스젠더간의 혼인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젠더가 도입되어 제3의 성(젠더)이 인정이 되는 순간,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젠더간의 혼인을 이성혼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성혼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한다. 가령,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나 자신의 젠더는 반남반여인 자와, 역시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이나 자신의 젠더는 여성인 자가 혼인을 하려 할 경우, 생물학적 성의 관점에서는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되나 젠더의 관점에서는 다른 젠더간의 혼인(이성혼?)이 된다. 서로 다른 젠더간의 혼인 요청에 대해 그들의 생물학적 성별(sex)을 기준에 따라 동성혼으로 보아 혼인등록 수리를 거부한다면, 차별을 시정하려는 거센 요구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48 여성과 남성 이외의 모든 성 정체성을 아우르는 말.

49 Non-binary: does the UK recognise a third gender?, The Week, 2018, 5, 29., <http://www.theweek.co.uk/93908/non-binary-does-the-uk-recognise-a-third-gender>.

젠더 불일치와 간성과의 혼인,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와의 혼인 등 수십 가지의 젠더간의 조합이 가능한 젠더는 성별 이분법 체제 하에서 이성간의 혼인만을 법률혼으로 인정하는 현행 혼인제도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의 성(젠더) 도입은 결과적으로 현행 혼인제도 등 모든 사회질서와 법률관계, 신분관계의 폐지 또는 수정을 야기할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소결

젠더를 단순히 '사회적 성'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젠더 개념에 근거한 젠더평등을 단일하게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 정도로만 인식해서도 안 된다. 젠더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용어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이념적 용어이다. 젠더평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편향적이고, 여성계에서는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젠더 인권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성별을 인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남녀 성별 2분법 체제의 폐지와 제3의 성(젠더)의 도입이다. 더 나아가, 동성혼의 합법화와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현행 가족제도의 파괴이다.

이렇게 난해하면서도 위험한 젠더를 교과서에 넣어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정치적, 이념 갈등의 혼란 속으로 빠트려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젠더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모두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IV. ‘젠더교육’과 ‘성교육’은 과연 같은 것인가?

‘젠더교육’과 ‘성교육’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젠더교육을 성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1. 젠더교육

‘젠더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성(性)의 인권화, 권리화이다. 젠더교육에서는 ‘성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성적자기결정권과 섹스할 권리를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동화사 중학교 보건 교과서는 63 페이지에서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성 행동을 할지는 자신이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와이비엠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는 123 페이지에서 “성적 결정권이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이며 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개인적 노력과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의 노력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도 15 페이지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교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맡겨버리고 책임을 전

가할 것이 아니라 왜, 무슨 이유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주어야 하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성윤리와 의학적 관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되어야 한다. 이를 가르치지 않은 채, 성적자기결정권만 알려 주는 것은 올바른 교육법이 아니다.

그리고, 금성출판사 중학교 기술·가정1 교과서는 35페이지에서 7가지 피임법을 상세한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고, 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1 교과서는 33페이지에서 “자위행위나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피부 접촉, 대화를 통한 감정의 교류 등으로도 충분히 성적인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종족보존과 관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에 의해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성적 욕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피임법과 피임 도구를 설명하고 있다. 원교재사 중학교 기술·가정1 교과서도 37페이지에서 콘돔 사용법을 한 페이지에 걸쳐 순서에 따른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71페이지에서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들이 상호 동의하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교감 없이도 성적 호감과 관심만으로 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상세한 피임법이 소개되어 있는 교과서에는 어느 곳에도 성인이 될 때까지 성행위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없고, 마치 피임만 제대로 하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청소년간의 성행위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특히, 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진보적인

성 개념을 여과 없이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윤리적 판단이나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 급진적인 자유주의자의 입장이든,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든 판단과 선택은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가치 상대론적인 접근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제목은 왜 ‘생활과 윤리’인지, 필자들이 생각하는 윤리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옳고 그름이 없는 윤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젠더교육은 섹슈얼리티를 성적 욕망과 쾌락인 것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지학사 도덕1 교과서는 125 페이지에서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을 기술하고 있고, 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도 70 페이지에서 “인간의 성적 욕망에 관련된 심리나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할 때는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경험으로 인한 편견을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젠더교육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런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혼전순결이나 절제와 같은 성의 도덕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학교 보건, 기술·가정, 도덕과 고등학교 보건, 기술가정,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청소년기의 성행위를 보류할 것을 언급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낙태와 관련하여 젠더교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우선시 된다. 피임의 방법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 어느 교과서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다.

젠더교육에서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도 정상으로 가르치고, 성소수자의 차별을 성차

별과 동일시하면서, 동성애로 인한 보건적 유해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76 페이지에서는 ‘성적 지향’을 ‘특정한 성별에 애정적으로 끌리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와이비엠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54 페이지에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다. 와이비엠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는 121 페이지에서 ‘동성애, 양성애, 비성애(무성애), 이성애, 성적 지향’을 설명하고 있고, 122 페이지에서는 동성애의 역사, 반동성애 측의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의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다. 트랜스젠더와 관련 되는 ‘성 정체성’ 용어는 중학교 기술가정, 도덕과 고등학교 보건, 생활과 윤리에 상당히 많이 기술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교과서에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가능성 등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윤리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⁵⁰

2. 성교육

반면에, 올바른 ‘성교육’은 성(性)의 윤리적, 도덕적,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따라서 지켜야 하며,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한다. 청소년들의 성적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 내용이 체계화 되고, 성적 문란으로 인한 보건적 유해성을 반드시 알려준다. 태아의 생명권의 소중함과 잘못된 성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 준다. 성에 대한 너무 상세한 묘사와 사진을 넣지 않음으로 자칫 음란

50 와이비엠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는 122 페이지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이 동성 간의 사랑이 에이즈 등의 질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동성 성행위의 에이즈 감염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성을 띠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적, 보건적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것으로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81권의 교과서**에는 성병 예방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누락되어 있었다. 청소년기 성에 대한 윤리적 교육 내용도 매우 부족한 편이었다. 우리 교과서에 성교육이 아니라 젠더교육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성교육이 젠더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편향적이어서도 안 된다. 교과서를 성해방의 이념적 선전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에 근거한 성윤리 교육이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잘못된 성과 동성애로 인한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문제점도 균형감 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2015년 2월에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젠더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올해에 전면 개정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교과서의 젠더교육 내용이 한층 더욱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

V. 외국 젠더교육의 폐해 사례

이하에서는 젠더교육에 대한 외국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초등학교 동성애 젠더교육

젠더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영국에 있는 뷰세이 랫지 초등학교(Bewsey Lodge Pri-

mary School)에서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서 동성 하인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하였다.⁵¹ 이 수업은 BBC Radio Manchester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18일에 공개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소수자(LGBT)에 대한 교육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든지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와 양성애 혐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LGBT 옹호 학교로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학교는 교복도 치마든 바지든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초등학교 트랜스젠더 호칭 사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에 있는 락클린 유치원(Rocklin Academy)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고,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⁵² 학부모들에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유치원 수업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 남자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5세 아이들은 자신들도 반대의 성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한다.

51 영국 “해리 왕자가 되어 토마스에게 청혼 연애편지를 써보세요”, 글로브뉴스픽, CREDO 매거진 2호, 10 페이지 (2018년 12월).

52 School disciplines first-grader for ‘misgendering’ a gender-confused classmate, LifeSite News, 2017 8 24 .

이 사건 후에, 이 유치원과 같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를 보고 남자 아이였을 때의 이름을 불렀다. 초등학생은 그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모르고, 실수로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아이의 남자 이름을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초등학생은 교장실로 불려가 트랜스젠더 아이에게 고의로 남자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만, 학교측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아이를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대답만을 들었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은 그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영국 성전환 아동 10년간 2,500% 이상 증가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 영국의 여성평등부 장관 페니 모던(Penny Mordaunt)은 지난 8년간 자신의 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2009년~2010년 사이에 남녀 아동 총 97명이 성전환 시술을 원했었는데, 2017년~2018년 사이에는 그 수가 총 2,519명으로 2,50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여성평등부는 소셜 미디어와 학교에서의 트랜스젠더 이슈에 관한 교육이 어린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사춘기가 안 된 어린 아이들을 성전환을 위해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직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동들에게 젠

더평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³

4. 급진적 젠더교육을 폐지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8~9세에 동성애와 성적체성을 교육하고, 11~12세에는 젠더 표현과 성적 지향 개념을 소개하며, 12~13세에는 구강 성교와 항문 성교를 소개하고, 13~14세에는 성관계 계획을 세워 볼 것을 교육하는 급진적인 젠더교육을 2015년부터 시행했다.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일찍이 자위행위와 항문 성교, 구강성교 등을 가르치는 것은 해당 연령에 부적절한 교육이며 이는 성적 방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었다. 올해 새로 취임한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이 젠더교육을 올해 9월에 폐지하였고, 1998년의 성교육 과정으로 회귀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⁴

한편, 우리 교과서에서는 14세에 동성애가 나오고(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성 정체성을 설명하며(주리베르스쿨 중학교 도덕1 등), 자위행위를 소개하고(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1), 콘돔 사용법 등 다양한 피임법을 설명하고 있다(원교재사 중학교 기술·가정1 등). 또한, 17세에 상호 동의만 하면 성적 호감과 관심만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천재교과

53 영국 성전환 아동 10년간 4,400+% 증가, 글로브뉴스픽, CREDO 매거진 2호, 9 페이지 (2018년 12월).

54 급진적 성교육을 폐지하고 20년 전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글로브뉴스픽, CREDO 매거진 1호, 11페이지 (2018년 10월).

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현재 우리 교과서를 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폐지 전 젠더교육에 비교해 연령만 다소 높을 뿐, 그와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한국 인권교육지원법안 철회

지난 8월 24일, 정성호 외 19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10월 1일 최종적으로 철회되었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지난 2014년에도 유승민 외 다른 의원들이 발의하였다가 철회되었던 전례가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구급·보호시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직원, 교원, 학생, 종사자, 수용자, 군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안 제2조 제5호와 제6조) 문제는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포함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인권을 인권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아로부터 시작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이 법안이 철회가 된 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성명에 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인권 교육이 의무화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꾸준히 외쳐온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인권교육이 인권교육지원법안을 통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미래 세대의 교육 현장을 급습할 뻔한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이 자진 철회됨에 따라 유엔의 인권교육 중요성 강조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른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영국, 미국, 캐나다 사례와 같은 수준의 젠더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서는 이미 젠더교육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VI. 나가는 말

젠더는 서구에서 수입된 용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매우 난해한 개념이며, 다양한 의견 대립이 있는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계에서도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일치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개념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단순한 사회적·문화적 성 차원을 넘어서 성적 쾌락, 성적 지향(동성애와 양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기에 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젠더라는 개념이 평등과 결합하여 젠더평등이 만들어졌고, 무엇이 젠더평등인지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그

러나, 젠더평등은 현행 헌법하에서의 양성평등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젠더평등 논쟁 과정에서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젠더를 교과서에 실어서, 중, 고등학생들에게 젠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청소년들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고 확립된 지식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합당한 내용만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젠더교육은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 성의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젠더교육은 가치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모두 옳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철학적 근거도 빈약하다. 옳고 그름이 없는 윤리, 도덕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고, 인간을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타락시킨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미 그 부작용이 입증되어 급진적인 젠더교육을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하였다. 헝가리는 젠더는 이데올로기일 뿐 과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에서의 젠더 관련 연구를 금지시켰다.⁵⁵ 이러한 추세를 살피지도 않고, 젠더교육을 교과서에 대폭 담은 것은 무지의 소치인지, 정치적 의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학부모들은 청소년인 자녀들이 이념적 논쟁에 휘말리거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과서에 들어 있는 젠더 관련 내용 일체를 삭제하고, 올바른 성윤리가 포함된 균형 잡힌 성교육 내용으로 복구시킬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교과서에 사용된 젠더 용어는 모두 삭제하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 검증된 명확한 다른 국문 용어로 대체하여야 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내용도 모두 삭제하고, 동성애의 보건적, 정신의학적 유해성과 윤리적 문제를 추가하여야 한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피임법, 성적자기결정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의사, 교사 등 전문가들의 공정한 검증을 거쳐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성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 내용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학교가 성별 결정 기준을 변경하고,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며,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젠더 인권운동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가 교과서에서 정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청소년들이 성의 오용과 남용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여야 할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이 병들면 대한민국이 병들게 된다.

55 헝가리 “젠더는 이데올로기일 뿐 과학이 아니다”, 글로벌뉴스픽, CREDO 매거진 2호, 9 페이지, (2018년 12월).